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가단113057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redacted]시

피 고 1. 주식회사 [redacted]

2. A

변 론 종 결 2016. 10. 12.

판 결 선 고 2016. 11. 2.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17.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redacte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0. 17.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redacte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1990. 12. 14. [redacted]시 B 외 4필지 5,359㎡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1991. 10.경 C아파트 건설사업을 완료하여 같은 달 17.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들은 위 아파트 단지의 출입구와 접하고 있는 주변 통행로로서 그 주택건설사업지구 내에 위치하였으며, 위 아파트 건설 무렵 피고 회사가 포장공사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라. 앞서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1, 2항 토지에 관하여 1990. 9.말경 도로로 지목변경(기존 지목은 각각 대지와 임야였다)과 공유물 분할을 거쳐 같은 달 27.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목록 3항 토지에 관하여 1990. 4.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1, 2항 토지와 같은 시기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기존 지목은 대지였다)에서 한 상태였다.

마. 피고 A는 피고 회사를 포함하여 3인과 공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4, 5항 토지에 관하여 각 1990. 9. 26.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에 앞서 1989. 10.경에는 인접 대지인 D, E 지상의 주택 건축허가를 위하여 위 토지들을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승낙한 바 있었다.

바. 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당시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2. 29. 법률 제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항은 "사업주체가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에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1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사업계획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으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개발공사는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도시계획법(1999. 2. 8. 법률 제5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1, 14, 15, 17, 18, 20, 21~25, 2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중 사업지구 내에 새로이 설치한 도로로서 공공시설에 해당되므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준공일인 1991. 10. 17.에 관리청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별지 목록 1, 2, 3항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그 소유권을 온전하게 취득할 당시 지목이 대지 또는 임야였을 뿐만 아니라 갑 20~22, 29호증, 을가 2,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위 아파트 건설사업이나 같은 시기에 그 인접 토지(D, E)에서 주택 건축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통행로로 이용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1, 2, 3항 토지에 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토지들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준공일인 1991. 10. 17.에 관리청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에 대한 청구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에 필요한 토지를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매수하거나 토지수용법에 따른 공공수용 등의 절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여 여기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그 공공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주택건설 사업시행자인 피고 회사가 별지 목록 4, 5항 토지에 관하여 일부 지분만 소유하였다가 사업승인 전에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가 위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였더라도 이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전단이 규정한 무상귀속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1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경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8-01

부동산 목록

1. [redacted]시 F 도로 53㎡
2. [redacted]시 G 도로 257㎡
3. [redacted]시 H 도로 76㎡
4. [redacted]시 I 전 245㎡
5. [redacted]시 J 임야 236㎡. 끝.